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1-52호
2021. 6. 25.(금)

차 례

고 시(2)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79호선 소리-와동2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고시 제2021-70호)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71호) 5

공 고(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신청 재공고(공고 제2021-713호) 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714호) 14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715호) 1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716호) 18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718호) 20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720호) 22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721호) 24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722호) 29
- 도로공사 시행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723호) 33

입법예고(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727호) · 3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728호) 4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729호) 4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730호) 5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731호) 6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732호) 68

공 람									
--------	--	--	--	--	--	--	--	--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146호(2018.7.17.) 및 대덕구 고시 2020-72호(2020.7.1.)로 결정된 대전 대덕구 와동 5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와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
 - 나.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도로(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 개설사업
3. 사업예정지
 - 가. 사업의 위치
 - (1) 중로3-279호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48-4번지~와동 41번지 일원
 - (2) 소로1-와동2호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83-13번지~와동 26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가. 사업의 규모

(1) 중로3-279호선: 도로개설 L=141m, B=4.0~12.0m

(2) 소로1-와동2호선: 도로개설 L=472m, B=10.0~12.0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 승인일로부터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편입토지조서 세목조서 붙임”

7.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끝.

○토지조서(중3-279호선)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	동	지번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계	대덕	와동	13필지		19,359	1,296						
1	대덕	와동	397	구	1,404	198	국(녹림축산식품부)	-				
2	대덕	와동	48-4	전	379	379	장*영	서울 도봉구 **동 56-1**				
3	대덕	와동	49-2	전	172	172	전*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 133-*				
4	대덕	와동	50	전	111	111	노*애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 7-1(신**)				
5	대덕	와동	51	전	30	30	허*부	대전시 동구 가99 32*-7				
6	대덕	와동	52	전	48	48	김*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14번길 47. 2**-2** (송촌동,선비마을아파트)				
7	대덕	와동	55	학	16,574	46	대전광역시(교육감)	-				
8	대덕	와동	53-1	전	30	30	최*달	대전시 동구 연축동 1**				
9	대덕	와동	53-2	전	60	60	최*달	대전시 동구 연축동 1**				
10	대덕	와동	54	전	226	118	최*희	대덕군 신탄진읍 석봉리 118-**				
11	대덕	와동	42-1	대	201	3	진*화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3**-3	근저당권	회덕농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49번길 15-16 (중리동)	
12	대덕	와동	42-3	전	117	95	김*중	대덕구 동춘당로 151, 1**동1***호 (법동,그린타운아파트)				
13	대덕	와동	41	답	7	6	김*중	대덕구 동춘당로 151, 1**동1***호 (법동,그린타운아파트)				

※ 상기 토지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후 조정될 수 있으며, 편입토지 내 지장물 포함임.(지장물건은 조정될 수 있음)

○토지조사(소로1-와동2호선)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 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	동	지번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계	대덕	와동	9필지		37,813	4,485					
1	대덕	와동	383-10	대	37	2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대덕	신대동	216-2	도	1,134	7	국(국토교통부)	-			
3	대덕	신대동	216-7	도	17	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대덕	와동	383-4	도	1,804	1,804	국(국토교통부)	-			
5	대덕	와동	383-13	대	6,050	89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6	대덕	와동	503	잡	1,348	5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7	대덕	와동	504	도	174	131	국(국토교통부)	-			
8	대덕	와동	12-2	도	3,091	1,441	국(국토교통부)	-			
9	대덕	와동	26	대	24,158	12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상기 토지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후 조정될 수 있으며, 편입토지 내 지장물 포함임.(지장물건은 조정될 수 있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324-12	오정로63번길 14	2021. 6. 25.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6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가.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신청 재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1. 12. 31. 만료됨에 따라 차기 대덕구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2021. 6. 18.~ 6. 21.까지 금고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1개 금융기관만 참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 가.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를 지정한 기한 까지 서면으로 제출
 - 나.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결정
2. 약정기간 : 4년(2022. 1. 1. ~ 2025. 12. 31.)
3. 금고의 수 : 단일금고
4. 신청자격 :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금고의 주요업무
 - 가.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나. 자금의 보관 및 관리
 - 다. 현금·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 라. 기타 금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신청절차
 - 가. 재공고기간 : 2021. 6. 25.(금) ~ 6. 30.(수) / 5일간 ※ 공휴일 포함

나.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 접수

- (1) 일시: 2021. 7. 1.(목) 1일간 09:00 ~ 18:00
 - (2) 장소: 대덕구청 세무과 세정팀
 - (3) 부수: 11부(원본 1, 사본 10) ※ 요약서 11부 별도 제출
 - (4) 방법: 직접방문 제출
 - (5) 제출서류: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 우리구 금고지정 신청 1차 공고(제2021-588호, 2021. 5. 28.)에 따라 금고지정 신청을 한 금융기관은 신청서만 제출[1차 접수된 제안서(증빙자료 등)로 대체]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별표 참조”

8. 심의 및 평가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심의·평가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기 제출된 신청 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되, 추가 보충자료 요구 및 면접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음

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로 평가받은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지정함 다만,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함

마. 심의와 관련된 평가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9. 비용부담: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약정체결 사항, 금고로 선정된 후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10.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나. 신·구 금고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 하도록 함
- 다.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2. 1. 1.부터 실제로 정상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라.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으며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며 앞으로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사항

- 가. 신청 제안서는 대덕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나. 신청서(제안서) 11부는 확인 후 밀봉 예정으로 제안서 제출 시 금융기관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마감 후에는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함
 - 라.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의 공개여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 마. 1개의 금융기관만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함
- ※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042-608-6621) 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 평가기관	(4)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6)	
- 고정이하 여신비율	(6)		
- 자기자본 이익률	(5)		
- 대손충당금 적립률	(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3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라. 관내 서민대출 지원실적 및 계획	2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I. 일반원칙

1. 점수부여 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평가한 후 세부항목별 금융기관 순위 또는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2. 순위간 점수편차 : 순위 또는 등급간 점수편차는 항목 1, 3, 4의 세부항목은 10%로 하고, 항목 2, 5의 세부항목은 5%로 한다. 다만,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II.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비교하여 평가하되, 지역조합은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 ※ 지역조합은 ‘총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로 평가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을 따름
- ※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기간별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금리 또는 수익성을 비교·평가한다.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공금예금 금리를 비교·평가한다.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대출금리를 비교·평가한다.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2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 10억 이상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3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기 설치 대수의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비교·평가한다.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방안, 휴일 또는 영업시간 외의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다.

라. 관내 서민대출 지원실적 및 계획(2점)

- 관내 소상공인, 저신용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실적 및 계획을 비교·평가한다.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수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 능력을 비교·평가한다.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과 금고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을 비교·평가한다.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다.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OCR센터 설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한다.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

해구호활동, 인재육성사업, 문화·관광·스포츠 진흥,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다.(3점)

-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를 비교·평가한다.(1점)
-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실적을 비교·평가한다.(1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약정기간 동안 구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비교·평가한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굴착구간	굴착목적	굴착위치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신탄진동로 47번길	도시가스 매설	신탄진동 126- 11	150	아스콘	132.0	착공일로 부터 20일간	158.4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23.18
				225	소형고압블록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26-11번지

위 치 도



굴착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26-11번지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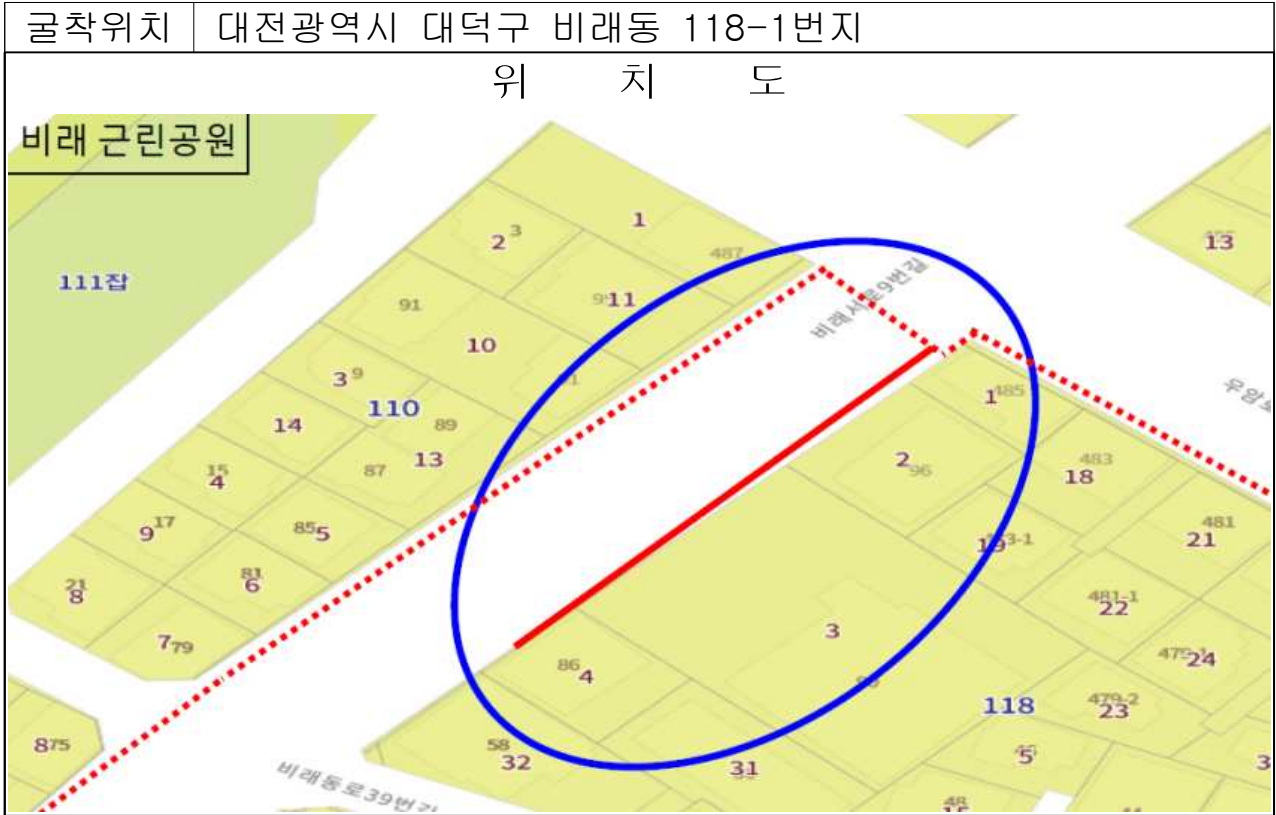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굴착구간	굴착목적	굴착위치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우암로	도시가스 매설	비래동 118-1 번지	63	아스콘	79.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94.8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17.22
				110	투수아스콘				
				225	소형고압블록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18-1번지
------	-----------------------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굴착구간	굴착목적	굴착위치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덕암로	도시가스 매설	덕암동 18-3 번지	63	아스콘	46.0	착공일로 부터 20일간	55.2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4.26
				160	콘크리트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굴착구간	굴착목적	굴착위치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대덕대로	전선케이블 교체	문평동 93번지	55	아스콘 소형고압블록	460.0	착공일로부터 10일간	239.80 (착공일로부터 10일간)	-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93번지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93번지
------	--------------------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정보화담당관)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굴착구간	굴착목적	굴착위치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계족산로	통신관로 매설	송촌동 529 번지	100	투수아스콘 소형고압블록	7.0	착공일로부터 5일간	8.40 (착공일로부터 5일간)	0.84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29번지
<p style="text-align: center;">위 치 도</p>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29번지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p>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2과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굴착구간	굴착목적	굴착위치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한밭대로	대전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오정동 58-11 번지	200	아스콘	68.0	2021.06. ~2 022.06.	84.60 (2021.06. ~ 2022.06.)	13.60
					투수아스콘				
2	대덕구 한밭대로	대전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오정동 707 번지	200	아스콘	41.5	2021.06. ~2 022.06.	49.80 (2021.06. ~ 2022.06.)	8.30
					소형고압블록				
3	대덕구 대전로	대전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오정동 10-15 번지	200	투수아스콘	44.8	2021.06. ~2 022.06.	61.80 (2021.06. ~ 2022.06.)	9.00
4	대덕구 대전로	대전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오정동 9-1 번지	200	아스콘	143.0	2021.06. ~2 022.06.	210.90 (2021.06. ~ 2022.06.)	28.60
					소형고압블록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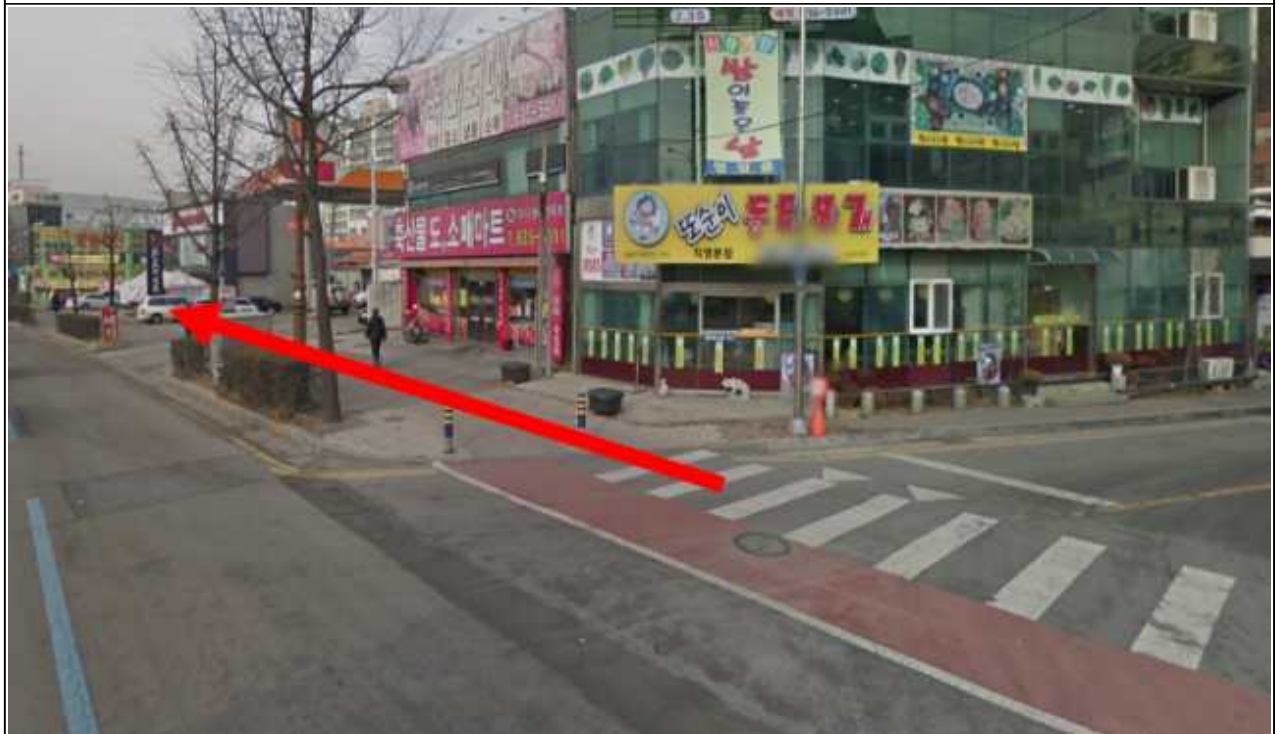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7번지
<p>위 치 도</p>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7번지
<p>사 진</p>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0-15번지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0-15번지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9-1번지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9-1번지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굴착구간	굴착목적	굴착위치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덕암북로 70 번길	도시가스 매설	덕암동 21-3 번지	63	아스콘	2.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2.4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0.13
2	대덕구 비래서로 61 번길	도시가스 매설	비래동 139-1 1번지	63	아스콘	7.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8.4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0.44
3	대덕구 대전천북로	도시가스 매설	오정동 736 번지	80	아스콘	8.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9.6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0.64
					콘크리트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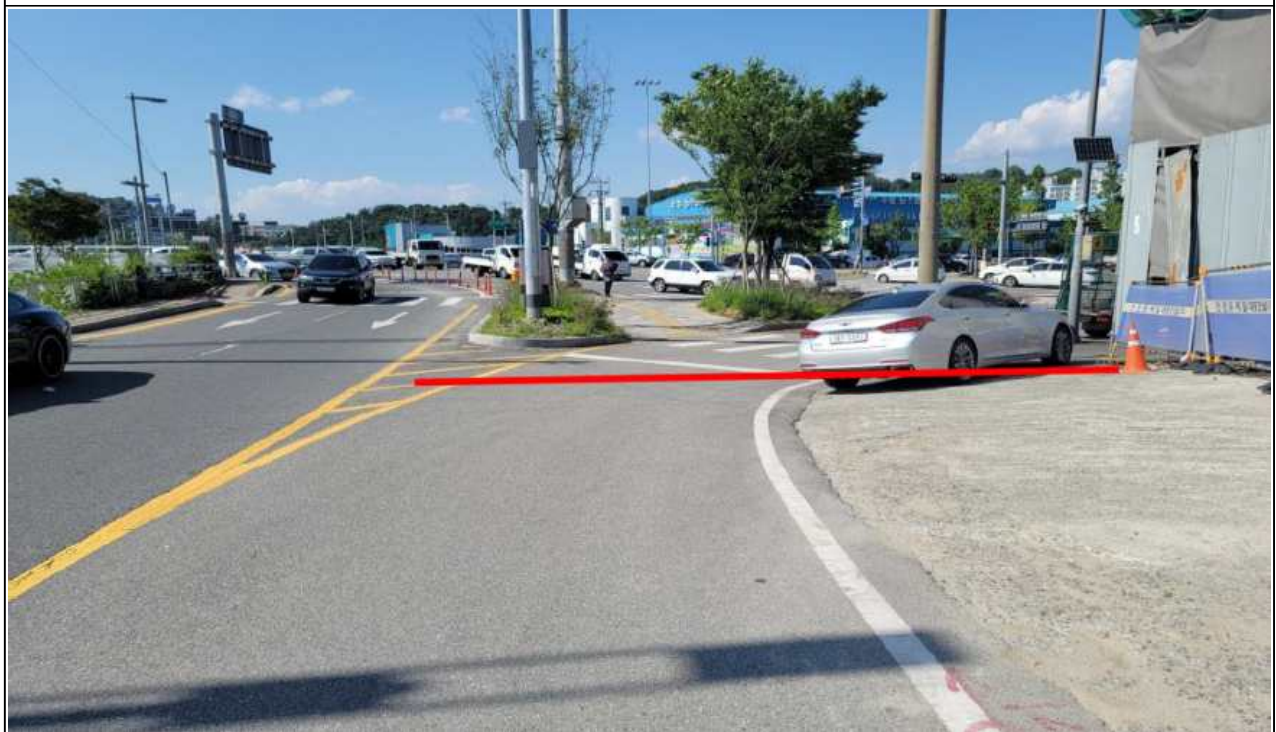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39-11번지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39-11번지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36번지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36번지
사 진	



도로공사 시행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공사구간	공사목적	공사위치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1	대덕구 대덕대로	노후된 도로 재포장	대화동 40-37번지	아스콘	200.0	'21.06.25. ~ '21.06.26.	2,000.00 ('21.06.25. ~ '21.06.26.)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37번지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37번지
사 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율에 관한 특례사항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2021년부터는 법령에서 별도로 경감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

42-608-3824, 이메일 : pk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담당자 박근옥

(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략)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21. 1.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법 인 범위를 명확화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 개정에 따라 관련 서 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
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42-608-38
24, 이메일 : pk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담당자 박근옥(전
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대리인 충족 요건확인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별지 제11호서식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대리인란 중 “자격”을 “선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

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22. 2. 3. 시행)으로 가산세·가산금이 통합되어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 및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

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42-608-38

24, 이메일 : pk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담당자 박근옥(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을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4조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을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u>가산금 및 증가산금을</u>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u>가산금 및 증가산금을</u>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 ----- ----- ----- <u>납부지연가산세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 ----- ----- ----- ----- <u>납부지연가산세를</u> ----- -----.</p>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

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정비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

길 20 (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전화 : 042-608-66

22, 팩스 : 042-608-3824, 이메일 : pk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담당자 박근옥
(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u>재산분</u>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p>	<p>제1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 ----- ----- ----- ----- ----- <u>사업소분</u> ----- ----- ----- ----- -----.</p>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원 처리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

42-608-3824, 이메일 : pk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담당자 박근옥
(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p> <p>② <u>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u></p>	<p>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1. 4. 6. 시행)에 따른 표준수수료 조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에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고, 근거법령의 적용 조문을 명확

하게 정비함(안 제8조).

나. 개별법령에서 징수 근거가 삭제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종류를 삭제함(안 별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수수료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42-608-3824, 이메일 : pk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담당자 박근욱 (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아목) 중 “제5조의2”를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별표 중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자목1) 중 변경신고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제증명은 제외한다.</p> <p>1. ~ 4. (생략)</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p> <p>가.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6조</p> <p>나.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6조</p> <p>다.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5조</p> <p>라.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4조</p>	<p>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p> <p>가.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p> <p>나.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p> <p>다.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p> <p>라.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p>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6조

<신 설>

<신 설>

후유증 2세환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
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
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

<p>사.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p> <p>아. 「<u>한부모가족지원법</u>」 제5조 및 <u>제5조의2</u></p> <p>② (생략)</p>	<p><u>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u>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p> <p>자. 「<u>장애인복지법</u>」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p> <p>차. ----- ---- <u>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u></p> <p>② (현행과 같음)</p>
---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

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부 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조 ~ 제11조 (생략)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 제20조 (생략)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